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년월일 : 1993. 1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방단위 각종위원회중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전산화추진위원회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지금까지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는 지역전산본부설치 운영조례 11조에 '전산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산화추진위원회 기능을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토록 동 조례를 개정 (안제11조제1항)
- 전문가 및 교수등 3인이내 위촉위원은 종전과 같이 존치 (안제11조제3항)

3. 근거 법령 : 없음

※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에 따른 세부지침

- 첨 부 : 1.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4. 참고 자료

- 1. 현행 조례 전문
- 2.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에 따른 세부지침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주요업무심의)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는 도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는다.

③지역전산본부 주요업무 심의조정시의 위원회에는 전산관련 전문가 및 교수중 3인 이내의 위촉위원을 둔다.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전산화추진위원회) ①지역전산 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3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이용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사항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업무 관련업무 실·국장(6인이내)과 교수 및 전문가(3인이내)중 위원장이 위촉 한 자로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관 이 된다.</p> <p>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 (주요업무심의) ①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는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받는다.</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p>③지역전산본부 주요업무 심의조정시의 위원회에는 전산관련 전문가 및 교수중 3인이내의 위촉위원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1988. 5. 20 조례 제1628호]

개정 1990. 11. 2 조례 제183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행정전산화와 관련된 업무개발 전자계산조직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 전산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개발처리 및 기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②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③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④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등)와 전산처리된 출력보고서를 말한다.

⑤ "전산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⑥ "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⑦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한 대가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⑧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도 단위업무의 실, 국, 원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⑨ "단말장치"라 함은 지역전산본부 컴퓨터등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하는 단말기와 통신관련기기 또는 독자처리를 위해 설치된 다기능사무기기(W/S)등을 말

⑨ “단말장치”라 함은 지역전산본부 컴퓨터등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 단말기와 통신관련기기 또는 독자처리를 위해 설치된 다기능사무기기(W/S)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업무의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 장기 지역전산업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국가행정전산화 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추계
4.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5. 기타 지방행정전산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년도의 도 전산업무 개발추진등에 관한 지역전산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은 다음년도의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전산본부운영책임) 지역전산본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 전산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 책임관리 한다.

제 2장 지역전산본부설치

제7조 (설치책임) ① 도지사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지역전산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역전산본부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기간전산망 추진계획에 의하고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원은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보등) ① 도지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

1. 기기설치에 따른 기계실, 입력실, 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작업실, 자료실

3. 기타 지역전산본부에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전문요원, 운영업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설치) 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에 설치하는 전자계산조직과 동장비의 온·습도, 일정한압 등 최적상태유지 및 청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물자관리) ① 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의 기기운동을 위한 물자는 적정량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급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매년 소모량이 많은 물자를 적기에 구매공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초에 총량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전산시설, 비품, 소모품등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전산물자에 대한 자체 재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산추진위원회) ① 지역전산본부의 주요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3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이용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업무 실, 국장(6인이내)과 교수 및 전문가(3인이내)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관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업무개발 및 운영

제 12조 (업무의 개발) ①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관간 동일업무를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내무부 개발단의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담당관이 업무를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한 후에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전산본부에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13조 (용역개발) ①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한 업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타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공무원으로 구성된 용역개발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과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 (타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①도지사는 타기관이 도의 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비키위하여 도 전산요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개발기관의 업무개발내용, 운영방법, 유지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사항을 도 전산요원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 (저작권등록등) 도지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한다.

제 16조 (보고) 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2. 제13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장 전산자료 관리이용

제 17조 (원시자료) ① 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당해업무의 담당자가 하며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도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②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18조 (자료의 관리) ① 기구축된 전산자료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전산부서간 주요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 19조 (전산화일의 보존) 도지사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한다.

제 20조 (전산자료의 제공) ① 주관부서장이 전산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에 담당관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1조 (자료입력) ① 지역전산본부가 자체 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월간 및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료입력량이 자체 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력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

제 5장 전자계산조직운영

제 22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지방행정전산화추진규정등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23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① 단말장치의 수용판단과 설치는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기기성능

기성능판단, 기종 또는 소요예산확보등은 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당관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 (수탁업무처리) ① 담당관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 담당관은 타 시도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6장 유지보수 및 운영재원

제25조 (유지보수) 도지사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유지보수체제) ① 유지보수는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유지보수는 정상시의 운영유지보수를 말하고, 특별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의 복구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전산기기나 전산장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7조 (일반유지보수) ① 도지사는 전산기기,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의 호환성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산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예비점검을 월 2회이상 실시하도록 공급업체와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유지보수) ① 도지사는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 발생시에 대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 군, 구, 읍, 면, 동 단말장치 장애시 효율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하여 예비장비를 보유하는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특별유지보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장치 등을 운영하는 때에는 항상 점

검제제를 유지하여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장애발생시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장애분석 결과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상급 기관과 유지보수에 관하여 계약된 공급업체에 장애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유지보수 계약업체는 장애상황을 판단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30조 (시설보안) ①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역전산본부에 상시근무하는 자 이외의 자의 출입사항을 항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료통신보안 및 거부) ①도지사는 주요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자료의 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수준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에 설치된 운영기기와 자료 등을 비상시를 대비하여 거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요화일의 보안대책) ①담당관은 주요화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상용하는 각종 화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지역전산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이상 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기기조작권한 부여) 담당관은 기기조작자에게 조작범위를 등급별로 정하고 등급별 순위에 따라 기기 및 화일의 조작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안관리) ①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의 제반시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담당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요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 8 장 전산요원관리

제35조 (전산요원) ① 전산요원은 전산관리자, 시스템분석자,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입력요원, 자료체크요원 등으로 구분하며 기능별 직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전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별로 필요한 전산요원과 일정수의 전산예비요원을 확보하여 관리한다.

제36조 (근무수칙) ① 도지사는 지역전산본부 및 시, 군, 구 전산관리업무에 종사는 관련기관의 파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은 지방공무원근무규칙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관련 기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7조 (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전산요원, 전산예비요원에 대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공단체, 사기업체 또는 기기공급업체에서 무상, 유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산요원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과정, 전문과정, 특별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전산예비요원의 교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하되 전문과정 수료자는 일정기간 지역전산본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 (충청북도조례 제1628호, 1988년 5월 20일)는 이를 폐지한다.

관인생략

충청북도

우 (360 - 765) 청주시 문화동 89 / 전 화 (0431) 52 -5587 / (FAX 52-5587)

문서번호 기획 12209 - 541

시행일자 '93. 9. 13

(경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결	출상관	26	지	
접	일자 시간	'93. 9. 15	시	
수	번호	1130	결	
처	리 과	지 소 계	재	
담	당 자		공	
			람	계

제 목 지방단위 각종위원회정비에 따른 세부지침시달

1. 기획 12209-446('93. 8. 10)호와 관련임.

2. 지방단위 각종위원회정비에 있어 각 부서별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정비대상위원회의 추진 노력등 미흡한 사례가 있어 별첨과 같이 정비대상 위원회를 확정 시달하니 위원회 조기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8월중위원회정비실적 1부. 끝.

충청북도지사서

수신처 : 거(13-56), 너(1, 2, 3), 더(1-14)

지방단위각종위원회정비에따른세부지침

충 청 북 도

지방단위각종위원회정비에따른세부지침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에 있어 일부 위원회의 추진
누락 등 미흡한 사례가 있어 정비대상위원회를 확정, 집중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정비의 내실있는 추진 도모
※정비대상위원회 외에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자율정비

□ 정비대상위원회 현황

- 현행 위원회 : 138종(3,387위원회)
- 정비대상 위원회 : 59종(240 ")
 - 도 : 30종(30 ")
 - 시군 출장소 : 26종(119 ")
 - 읍면동 : 3종(91 ")

□ 세부지침

- 법령 또는 중앙부처지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중앙부처
지시에 의거 정비
 - 도 관련부서에서는 관계부처에 수시 확인하여, 도설치위원회
정비 및 시군위원회 정비지침 시달
- ※ 중앙부처에서는 법령근거 위원회는 연말까지, 훈령·지시에
의한 위원회는 10월말까지 소관부처별로 정비예정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등으로 자체설치한 위원회 : 도,시군별로
정비
 -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 지방의회 개최시 개정, 10월중
정비조치(도,시군)

- 훈령·지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9월중 정비조치(도, 시군)
- 도의 조례, 훈령·지시에 의한 시군의 정비대상 위원회는
도 주관과에서 정비지침 시달
 - 조례개정을 요하는 위원회 : 조례개정 지침시달, 10월중 정비조치
 - 조례외 훈령·지시로 설치된 위원회 : 즉시 지침시달, 9월중 정비조치

○ 위원회 명칭 변경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 『위원회』명칭 사용
 - 기타 부령 또는 훈령, 행정지시에 의한 위원회는 중앙부처 지시없이 본 총리지시에 의거 『협의회』로 명칭변경: 9월중 정비(도, 시군)
- ※ 근거 : '93 정부조직 관리지침(국무총리지시 제3호)

○ 기타 위원회 자율정비

-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회중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도 자율적으로 정비

ㄱ 행정사항

- 9월분부터 위원회 정비실적은 별첨서식에 의거 제출
 - 제출기한 : 25일 기준 30일까지 제출
 - 도에서는 각 실과별로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출

□ 정비대상 위원회 현황

< 정비대상별 >

구 분		계	도	시군출장소	읍면동
계		59 종	30	26(119)	3(91)
내 무 부 확 정	소 계	37	20	14(69)	3(91)
	통 합	25	13	10(38)	2(57)
	폐 지	6	4	1(1)	1(34)
	명칭변경 활 성 화	- 6	- 3	- 3(30)	- -
자 체 정 비	소 계	22	10	12(50)	-
	통 합	1	1	-	-
	폐 지	4	2	2(2)	-
	명칭변경 활 성 화	15 2	7 -	8(41) 2(7)	-

※ ()는 위원회수

< 설치근거별 >

구분	계	설 치 근 거			
		법령, 중앙부처 관련	도 관련	시군관련	읍면동 관련
계	59종	40	12	6	1
도	30	22	8	-	-
시군	26	16	4	6	-
읍면동	3	2	-	-	1

< 별첨 >

○월중 위원회정비실적

1. 정비대상위원회

구 분	정비대상	정 비 완 료			미 완 료 (추진중)	비고
		소 계	전 월	당 월		
계	종					
도 시군,출장소 읍 면 동						

2. 정비완료실적(당월분)

구분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총위원수	위원회정비			정비 조치
				대상	완료	미완료	
계							

※ 구 분 : 시군, 출장소, 읍면동으로 구분

설치근거 : 법령, 조례, 훈령지시로 구분

정비조치 : 통합, 폐지, 명칭변경, 직급변경, 기능활성화로 구분
(위원회별로 정비완료 관련자료 첨부)

지방단위 각종위원회정비대상 내역

□ 도 정비대상 : 30종

< 내무부확정정비 >

위 원 회 명	설치근거및소관부서	정비대상	추진부서	비고
계 : 20종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도)	통합(조정위원회)	공보관실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운영지침(내무부)	통합(조정위원회)	기획담당관실	
행정전산화추진위원회	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도)	통합(조정위원회)	전산담당관실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공무원임용령제37조의3및 공무원평정규칙제2조의6(총무처)	통합(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총무과	
보통승진임용심사위원회	승진임용등심의에관한규정제3조(총무처)	통합(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	
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	공무국의여행규정제4조(총무처)	통합(조정위원회)	"	
민원재심의위원회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지침(내무부)	통합(민원조정위원회)	민원담당관실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도)	통합(조정위원회)	사회과	통합완료
나환자정착촌생활대책협의회	나환자정착촌생활대책지침(내무부)	폐지	보건과	폐지완료

위 원 회 명	설치근거및소관부서	정비대상	추진부서	비고
모자복지위원회	모자복지법제6조(보건사회부)	위원장직급 조정(가정복지국장)	부녀복지과	
근로청소년장학금심사위원회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도)	통합(조정위원회)	청소년과	통합완료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청소년자립지원사업관리조례(도)	통합(조정위원회)	"	"
농지개량계약심의위원회	농지개량계약심의위원회규정(농수산부훈령제715호)	폐지	기반조성과	폐지완료
농축산물생산조정위원회	농축산물생산조정지침(농수산부)	폐지	농산물유통과	
토지이용심사위원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27조(건설부)	위원장직급 조정(부지사)	도시계획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법제30조의2(건설부)	"	도시개발과	
소방홍보위원회	행정지침(내무부)	폐지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법제23조	통합(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법제22조	통합(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	
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법제13조	통합(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	

< 자체정비 >

위 원 회 명	설치근거및 소관부서	정비 대상	정 비 사 유	추진부서	비고
계 : 10종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실무위원회	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시행규칙제2조(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위원: 13(공무원13,기관단체3) ○운영: '92 없음, '93 1회 ○정비사유 -운영실적 저조및 위원구성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내부협의로 기능수행 가능 ※상위위원회인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조정위원회에서 대행 	농어촌개발과	
농지전용조정심의회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6조(도훈령)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부지사 ○위원: 공무원 12명 ○정비사유 -위원구성이 전원 공무원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기능수행가능 	"	통합 완료
지역특화산업위원회	행정지시(내무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부지사 ○위원: 16명(무원7,교수2,기관단체7) ○운영: '92 1회, '93 없음 ○정비사유 -'92.11월 지역특화산업품목선정완료로 존치불필요 	"	폐지 완료
쌀소비촉진지원대책위원회	행정지시(농수산부)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지시제3호에의거 협의회로 명칭변경 	농산과	

위 원 회 명	설치근거및 소관부서	정비 대상	정 비 사 유	추진 부서	비고
경제발전위원회	도지사지시('93)	명칭 변경	○ 국무총리지시제3호에의거 협의회로 명칭변경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행정지시(내무부)	"	○ " "	"	
물가대책실무위원회	"	"	○ " "	"	
중소기업으로 타개위원회	내무부장관특별지시('92)	"	○ " "	"	
중소기업으로 타개실무위원회	내무부장관특별지시('92)	"	○ " "	"	
농축산물기술 대책위원회	행정지시(농촌진흥청)	"	○ " "	농촌진흥원	

□ 시군·출장소 정비대상 : 26종

< 내무부확정정비 >

위원회명	설치근거및소관부서	정비대상	추진부서	
			도	시군
계 : 14종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위원회	지도방문조정심의위원회운영지침(내무부)	통합(조정위원회)	기획담당관실	청주, 진천, 음성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의운영규정(도)	폐지	예산담당관실	괴산
제안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제안규칙(내무부)	통합(조정위원회)	지방과	청주, 제천시, 단양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법제78조(내무부)	통합(조정위원회)	회계과	청주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추진위원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운영규정(내무부)	통합(조정위원회)	사회진흥과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증원, 단양
민원재심의위원회	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지침(내무부)	통합(민원조정위원회)	민원담당관실	청주, 괴산, 음성, 증원, 제천군, 단양, 증평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군)	통합(조정위원회)	사회과	청주, 청원, 진천, 제천군, 단양
모자복지위원회	모자복지법제6조(보건사회부)	위원장직급조정(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과	충주, 제천시, 청원, 보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증원, 제천군

위원회명	설치근거및소관부서	정비대상	추진부서	
			도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군)	통합(조정위원회)	청소년과	청주, 진천
임업후계자심의위원회	임업후계자육성지침(산림청)	통합(농어촌발전심의회)	산림과	제천시, 영동, 진천, 괴산, 증원, 단양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내무부)	통합(물가위원회)	지역경제과	제천시, 옥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행정지시(내무부)	통합(조정위원회)	상정과	충주, 보은, 진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6(건설부)	위원장직급 조정(부시장 부군수)	도시개발과	각시군공통(단양 제외)
보상심의위원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9조(건설부)	위원장직급 조정(부시장 부군수)	"	청주, 충주, 청원, 옥천, 진천, 괴산, 음성

< 자체정비 >

위원회명	설치근거및 소관부서	정비대상	정비사유	추진부서	
				도	시군
계 : 12종					
노점상대책위원회	노점상정비관리종합 실천지침(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시장 ○위원: 19명(공무원16, 기타3) ○운영: '92, '93실적없음 ○정비사유: 운영실적이 없으며 위원구성대부분이 공무원으로 내부협의로 기능수행가능 	도로과	충주시
아동위원회	아동복지법제7조 (도: 위원회구성, 시, 읍면: 아동위원 만 선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위원중호선 ○위원: 20명(공무원3, 기타17) ○운영: '92 3회, '93 없음 ○정비사유 -위원만 선정운영하고, 위원회 는 폐지 	가정복지과	제천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시 조례	여성 위원 위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시장, 부시장 ○위원: 8-21명 ○운영: 연1회정도 ○정비사유 -향토문화창달및 발전에 공헌 한자를 발굴, 문화상을 시상함 에 있어 -심사위원중 여성위원 전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위원회명	설치근거및 소관부서	정비대상	정비사유	추진부서	
				도	시군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군조례	여성 위원 위촉 확대	○위원장: 군수, 부군수 ○위원: 8-14명정도 ○운영: 년1회정도 ○정비사유 -수상자선정에 있어 여성심사 위원 위촉확대 ※여성위원: 진천, 음성 각 1명		옥천 진천 음성 증원
고용촉진조정위원회	고용촉진훈련시행지침(노동부)	명칭 변경	○국무총리지시 제3호에 의거 협의회로 명칭변경 ※충주, 괴산, 단양, 증평제외	사회과	공통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행정지시(도)	"	○ ※제천시, 진천, 음성, 단양, 증 평제외	교통행 정과	공통
관광개발추진위원회	군 훈령	"	○		제천시
다수인관련민원대책위원회	다수인관련민원해소 추진관리계획(도)	"	○	감사담당관실	괴산 증원 제천 단양
일하는충주시 민큰상심의위원회	시규칙	"	○		충주

위원회명	설치근거및 소관부서	정비대상	정비사유	추진부서	
				도	시군
중소기업애로 타개위원회	내무부장관특별지시 ('92)	명칭 변경	○ 국무총리지시제3호에 의거 협 의회로 명칭변경 ※제천시, 제천시 제외	지역경 제과	공통
물가대책위원 회	행정지시(내무부)	"	○ "	"	공통
물가대책실무 위원회	"	"	○ "	"	주동산원 충양, 괴중

□ 읍면동 정비대상 : 3종

< 내무부확정정비 >

위원회명	설치근거및 소관부서	정비대상	추진부서	
			도	시군
계 : 3종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 회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관리 운영기금(보건사회부) ※보사부에서 기 폐지지시	폐지	보건과	보은9, 영동9, 음 성8, 제천시8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 영에관한지침(농수산부)	통합(읍면동 개발자문위 원회)	농어촌 개발과	진천4, 괴산11, 제천시8, 단양4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 조례(읍면동)	통합(읍면동 자문위원회)	지역경 제과	청원4, 보은2, 옥 천2, 영동1, 진천 3, 괴산11, 증원3 제천시2, 단양2